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2007. 12

안종석 · 구자은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제 과세원칙	9
1. 모델조약	9
가. OECD모델조약	9
나. UN모델조약	11
2.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12
3.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15
III.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18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	18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8
나. 과세범위	19
2. 과세방법	23
가. 종합과세, 원천징수과세의 결정	23
나. 원천징수	25
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7
IV.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29
1. 미 국	29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29
나.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신고방식	36
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38
라. 한·미 조세조약	39

2. 일본	40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40
나. 세율 및 과세방법	49
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52
라. 한·일 조세조약	53
3. 캐나다	54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54
나. 세율 및 과세방법	57
다. 주식양도소득	60
라. 조세조약	60
4. 독일	62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62
나. 세율 및 과세방법	65
다. 주식양도소득과세	67
라. 조세조약	67
5. 호주	69
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69
나. 호주의 자본이득과세	70
다. 조세조약	72
V. 요약 및 결론	74
1. 조세조약	74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5
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비거주자 과세체계	76
나.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77
3. 원천징수체계 관련	77
4. 조세회피관련	78
참고문헌	80

표목차

〈표 Ⅱ-1〉 부동산 과다법인 및 지분 과다법인 규정이 있는 조세조약·····	14
〈표 Ⅲ-1〉 과세주체별 납세의무·····	19
〈표 Ⅲ-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2
〈표 Ⅲ-3〉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방법·····	23
〈표 Ⅲ-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방법·····	24
〈표 Ⅳ-1〉 비거주자의 원천소득 항목과 소득원천지 결정기준·····	30
〈표 Ⅳ-2〉 미국 내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36
〈표 Ⅵ-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	50
〈표 Ⅵ-4〉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	51
〈표 Ⅴ-1〉 주요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특징·····	75

I. 서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비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거주자가 수취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원천지국에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아예 과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닌 자가 조약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펀드 등이 국내에서 이자, 배당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내·외국인이 조세회피지역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또한 향후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조약의 규정과 더불어 국내법상의 과세규정도 중요한데, 이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지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세조약에서 대부분 '원천지 비과세'로 규정되는 주식양도소득에 초점을 맞춰 주요 선진국에서 어떤 과세제도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고 우리나라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의 조약에서 원천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 남용의 기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유입된 외국계 사모펀드가 막대한 주식양도차익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OECD 및 UN모형을 통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조세 규범을 살펴보고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규범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한 후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본다. 검토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이다. 이들 국가들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과세방법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II.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제 과세원칙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법과 조세조약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다른 과세범위를 규정한 경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 과세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본고에서 검토대상이 된 주요국과의 조세조약 내용은 해당국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본 장에서는 OECD모델조약과 UN모델조약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과의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법과 조세조약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 모델조약

OECD모델조약과 UN모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소득(capital gains) 규정을 두어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소득은 별도의 조항에서 언급함이 없이 기타 양도소득의 일부로 보아 설명하고 있다.

가. OECD모델조약

OECD모델조약 제13조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이익 및 이러한 고정사업장(단독 혹은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이익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륙운수에 사용되는 보트, 그러한 선박, 항공기, 보트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유래하는 주식의 양도로 획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1항, 2항, 3항 및 4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본 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행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그 외 자산의 양도소득은 양도자가 거주자인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주식은 본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다. 주식에서는 국가간 협의를 통해서 '과세권을 부여받은 일방체약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타방체약국이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제5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거주지 국가가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원천지에서의 과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2003년 모델조약의 개정에서 특정한 부동산관련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제4항으로 별도 조항을 두어 제1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다. 주식에서는 추가적으로 파트너십 등의 지분가치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지분양도소득을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주식양도'를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분의 양도'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50%의 부동산 자산 기준은 국가간 협

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 UN모델조약

UN모델조약도 기본적인 원칙은 OECD모델조약과 같다. UN모델조약 제13조 양도 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의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단독으로 혹은 기업 전체로서 동 고정사업장의 양도 또는 동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혹은 항공기의 양도, 내륙수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혹은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주된 재산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대한 참가비율이 ...%(지분비율은 양국간의 교섭으로 결정된다)에 상당하는 경우, 그 지분(상기 제4항에 해당되는 지분을 제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상기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UN모델조약 제13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OECD모델과 차이가 거의 없다. OECD모델조약이 제4항에서 부동산관련 주식을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여 UN모델은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UN모델조약에서는 지분관계를 고려하여 비거주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OECD모델조약과 차이가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모델조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OECD모델조약과 UN모델조약에서는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특정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특정한 주식은 OECD모델조약에서 부동산관련 주식이고 UN모델조약에서는 부동산관련 주식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이다.

2.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은 OECD 및 UN모델을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관련 주식이나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 또는 둘 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2007년 1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69개 조약 중 37개의 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차액을 원천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5개의 조약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을 원천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일정요건 없이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 조약상에 규정이 없어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정요건은 OECD 및 UN모델에서 규정하는 ‘자산이

1) 핀란드와의 조약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향유권을 부여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조세조약 체결 현황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일정 지분을 이상의 주식'이며 그 외에도 보유 기간으로 과세를 결정하는 기준을 두는 터키와 같은 나라도 있다.

일정요건 없이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로는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룩셈부르크가 있다. 싱가포르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규정에서 전항에 규정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국에서의 과세권을 허용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고 있고 호주는 양도소득에서 주식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타소득에 포괄하여 타방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타방채약국에서의 과세권을 허용함으로써 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경우에 해당 규정은 없지만 기타소득 규정이 있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규정에 따라 거주지국 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의정서 제3조에서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는 기타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규정이 없어서 자국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로는 태국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69개의 조약 중에서 조세조약상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에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37개국과 조세조약상 일정조건 없이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3개국,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내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1개국 및 예외적으로 조세조약 및 의정서에는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 언급이 없으나 상호합의를 통하여 과세를 합의한 미국을 제외하고 28개국에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²⁾.

〈표 II-1〉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에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국가를 2007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며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국가로는 그리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시니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피지가 있다.

2) 호주는 국내 세법에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및 일정 지분을 이상의 주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나라로 분류

〈표 II-1〉 부동산 과다법인 및 지분 과다법인 규정이 있는 조세조약

	부동산관련	지분관련	서 명
네팔	○	×	2001. 10. 5 (서울)
노르웨이	○	×	1982. 10. 5 (오슬로)
뉴질랜드(의정서)	○	×	1981. 10. 6 (서울)
독일	○	○	2000. 3. 10
멕시코	○	○	1994. 10. 6 (멕시코시티)
모로코	○	×	1999. 1. 27 (리바트)
몰타	○	×	1997. 3. 25 (발레타)
몽골	○	×	1992. 4. 17 (울란바토르)
미얀마	○	○	2002. 2. 22 (양곤)
방글라데시	○	×	1983. 5. 10 (서울)
베트남	○	×	1994. 5. 20 (하노이)
스웨덴	○	×	1981. 5. 27 (서울)
스페인	○	○	1994. 1. 17 (서울)
아랍에미리트연합	○	○	2003. 9. 22 (두바이)
아일랜드	○	×	1990. 7. 18 (더블린)
영국	○	×	1996. 10. 25(서울)
오스트리아	○	○	1985. 10. 8 (서울)
요르단	○	×	2004. 7. 24 (서울)
우크라이나	○	×	1999. 9. 29 (키예프)
이스라엘	○	○	1979. 3. 18 (서울)
인도	○	×	1985. 7. 19 (뉴델리)
일본	○	○	1998. 10. 8 (동경)
중국	○	×	1994. 3. 28 (북경)
칠레	○	○	2002. 4. 18 (서울)
카자흐스탄	○	×	1997. 10. 18(서울)
캐나다	○	○	1978. 2. 10 (서울)
파키스탄	○	○	1987. 4. 13 (서울)
프랑스	○	○	1991. 4. 9 (파리)
핀란드	○	×	1979. 2. 8 (서울)
필리핀	○	×	1984. 2. 21 (서울)
호주	○	○	1982. 7. 12 (캔버라)
슬로베니아	○	×	2005. 4. 25 (서울)
베네수엘라	○	○	2006. 6. 26 (카라카스)
알바니아	○	×	2006. 5. 17 (서울)
핀란드	○	×	1979. 2. 8 (서울)
이탈리아	×	○	1989. 1. 10 (서울)
미국(상호합의)	○	×	1976. 6. 4 (서울)

3.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세율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인정하되 특정주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양 체약국의 과세권을 모두 인정할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달리 규정하지 않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원천지 과세가 허용된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을 규정하나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세율을 제한하지 않고 과세권의 배분만을 규정하므로 원천지 국가의 국내 세법에 규정된 세율과 과세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천지에서 과세한 소득에 대해 거주지에서 과세하는지 여부는 거주지 국가의 국내 세법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과세 결과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조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 물론 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이 적용된다.

조세조약과 국내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다 보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어느 쪽이 우선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³⁾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체결권은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력이므로 이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특별법 사이에 또는 일반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⁴⁾. 조세조약은 일반 국내 세법과는 달리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국한하여 적용되며,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국내 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조세조약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3) 헌법 제6조 제1항.

4) 김성수(2000).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세법에서 갑으로 소득 구분한 내용을 조세조약에서는 을로 소득 구분한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라 을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갑소득이 국내 세법상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상 을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여 새롭게 조세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하거나 국내 세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국내법상에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지만 조세조약에서 해당 소득을 양도자의 거주지국 과세로 규정하여 원천지인 국내의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약의 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천지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소득으로 보지만 조세조약에서는 원천지국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므로 일단 해당 소득이 원천지국의 소득이 된다. 하지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양국 거주자에게 국내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조약이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조약에서 부동산관련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 과세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

5) 이용섭(2005), 김완석(2006).

6) 이용섭(2005), p. 398.

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법상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외적으로 ‘국내법에 조세조약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국내법에 규정하여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⁷⁾.

7) 일본 법인세법 제139조(조세조약과 차이가 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규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규정에 관계없이 차이가 나는 결정의 범위 내에서 조약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조약이 법인세법 원천소득관련 규정에 대신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에 대응하는 각 호에서 제시한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Ⅲ.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의 과세제도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세범위 중에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범위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한다. 우선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거주자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거주자 판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본고에서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

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민법상의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⁸⁾, 납세의무자라는 세법의 관점에서 자연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할 수 있고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⁹⁾. 자연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서로 과세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¹⁰⁾. 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

8) 지원림(2006), p. 56.

9) 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2조.

무를 부담하고¹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¹²⁾. 물론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달리 구별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표 Ⅲ-1> 과세주체별 납세의무

민법상 분류	세법상 분류		적용세법	납세의무 범위
자연인	거주자		소득세법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법인	내국법인	영리법인	법인세법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은 자연인에 속하는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주식양도소득과¹³⁾ 법인에 속하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중에서 주식양도소득을 말한다¹⁴⁾.

나. 과세범위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10) 소득세법 제3조.

11)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1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13) 소득세법 제119조.

14) 법인세법 제93조.

소득(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포함),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포함),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본고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각 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내 세법에서의 과세범위

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소득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분류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함)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한편 외국법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었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관련해서는 외국법인 중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로 ②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고 ③ 양도법인 및 양도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

는 경우, 25%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로 ②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이외의 자에게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즉,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서 시행령에 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중 주식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법인세법은 시행령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여 토지·건물에 대한 자산가액 합계액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법인이 아닌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와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12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과 같은 내용으로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범위 및 비과세의 내용은 법인세법의 규정과 같다. 제9호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인데, 법인세법의 내용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제94조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도 앞에서 설명한 법인세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내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범위를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미만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관련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분소유 비율이 25% 미만이라도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표 Ⅲ-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양도목적물	양수자	양도자	지분비율	유가증권 시장 통한 거래 여부	국내원천소득	
					해당	해당 안 됨
부동산주식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0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의 유가증권	제한 없음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제한 없음		0	
주식 또는 출자증권	제한 없음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25% 미만	증권시장 거래		0
				기타	0	
			25% 이상	제한 없음	0	
기타의 유가증권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제한 없음		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한 없음			0

2. 과세방법

가. 종합과세, 원천징수과세의 결정

1)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¹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가 분리하여 과세하는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분리과세를 한다. 비거주자에게 부동산관련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거주자는 부동산관련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예납적 원천징수를 한 후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한다.

〈표 Ⅲ-3〉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방법

관련세법	소득분류	관련조문	과세방법	
			국내사업장·부동산 소득이 있음	국내사업장·부동산 소득이 없음
소득세법	유가증권양도소득	§119 12호	신고납부(종합과세)	원천징수(분리과세)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119 9호	신고납부(분류과세)	

15)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2)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가와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의 존재 여부이다.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¹⁶⁾.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인 경우에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가지는지를 구분하여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관련 주식의 양도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납적 원천징수 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다.

〈표 III-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방법

관련세법	소득분류	관련조문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법인세법	유가증권양도소득	§93 10호	신고납부 (종합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93 7호	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16)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나. 원천징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종합과세되거나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세나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한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구체적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의 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데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주식의 양수자, 증권회사 또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된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주식의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거래 유형별로 보면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하는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다만,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3)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주식 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대상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가액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4)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징수된 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나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원천징수를 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나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가 납세지가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납세지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한·일조세조약에서는 2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 양도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동일 사업연도 중 4회에 걸쳐 1차 2%, 2차 2%, 3차 2%, 4차 2%로 양도하고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때,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일본법인 A가 5% 이상 양도하여 과세대상인 것을 알 수 없으며, 양수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3차에 이르러서야 1차 및 2차를 포함하여 6%를 양도한 것이 되어 조세조약상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1차 또는 2차 양도시에는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 및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3차 양도시에 1차 또는 2차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3차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는 3차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며 1차 또는 2차에 양도한 부분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추후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특례 규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법 제93조 제1호)·배당(제2호)·사용료소득(제9호)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제10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법 제98조의 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

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우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법인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 후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IV.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본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독일 그리고 호주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각 국에 대해 먼저 과세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대략적으로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주제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방법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각 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는 국내원천소득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어떤 방법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이후에 본고의 주제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국의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국의 국내원천소득에 주식양도소득이 포함되는지, 포함되는 경우 어떤 기준을 통하여 과세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미 국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미국에서 비거주자의 과세에는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 내 사업(trade and business)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은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며, 그 소득이 미국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

먼저 각 소득별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지 결정 규칙을 설명하면 <표 IV-1>과 같다.

가) 이자소득

미국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이자소득은 사채, 어음을 포함하여 미국의 거주자나 미국법인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관계에 대한 이자와 과세연도 중에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한 외국회사나 국내·외 파트너십에 의해 지불된 이자를 말한다. 발행 어음에 대한 할인,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된 이자도 포함된다.

<표 IV-1> 비거주자의 원천소득 항목과 소득원천지 결정기준

국내원천소득 항목	소득원천지 결정기준
입금 및 급여	서비스 제공지
사업소득 : 개인서비스 매입된 재고자산의 판매 생산된 재고자산의 판매	서비스 수행지 재고자산 판매지 생산지와 판매지에 배분
이자소득	지급자 거주지
배당	지급자 거주지
임대료	자산 소재지
로열티: 천연자원 특허권, 저작권 등	자산 소재지 해당 자산이 사용된 장소
부동산의 매각	자산 소재지
개인재산의 매각	매도자의 납세지(예외 있음)
연금	연금을 얻게 한 서비스 수행지
천연자원에 대한 판매	수출지에서의 공정시장가치에 근거하여 배분(\$1,863-1(b))

자료: IRS(2006).

이자소득의 원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급자의 주소지이며 지급방법이나 지급장소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 지급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법인 등이면 미국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이전 3년간 벌어들인 총소득 중 80% 이상이 국외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이 외국에서의 사업에 귀속되는 경우 그 외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지불한 이자

둘째, 국내기업이나 파트너십의 해외지점이 지불한 것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이나 협동은행, 신용조합, 국내 건설 및 대부조합, 기타 연방법에 의해 저축대부조합 또는 유사한 조합에 의해 설립되고 감독받는 저축기관의 예금이나 요구불 계좌에 대한 이자

셋째, 해외에서 상업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이나 파트너십의 해외지점 저축에 대한 이자

나) 배당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지급자의 거주지이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원천소득이 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대부분 국외원천소득이 된다. 예외가 되는 것은 첫째, American Samoa 경제발전 세액공제(economic development credit)를 신청한 미국 회사가 지급한 배당은 국외원천소득이 되며 둘째, 외국법인이 지불한 배당이더라도, 배당을 공시하기 전 3년 동안 발생한 해당 외국법인 총소득(gross income)의 25% 이상이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미국 원천소득이 된다.

또한 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공시일 이전 3년 동안 발생한 해당 법인의 총 소득 중 80% 이상이 국외원천소득이고 해당 소득이 그 법인의 국외 사업에 귀속되는 경우 그 외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지불한 배당은 미국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개인서비스 소득

개인서비스 소득에 대한 원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서비스수행지이다. 미국 원천 소득이 되는 개인서비스 소득은 미국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임금, 보수 등이다. 만약 국내·외 양 쪽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임금, 보수 등을 받았다면 서비스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이 양국에 배분되며 부수적인 소득(예를 들면 임대료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은 지리적인 기준을 따른다. 또한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세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대체적인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라) 운송소득

운송소득은 항공기나 배와 같은 운송수단의 사용 및 관련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으로 도착되는 운송소득의 50%는 미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마) 장학금 등

장학금, 기부금, 상금 등은 지급자의 거주지가 소득의 원천지가 된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미국의 유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지급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외국의 원천 소득이 된다. 그러나 미국 법인이 지급한 장학금 등은 미국 원천소득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학생과 직업훈련생 등이 될 것이다.

학생과 직업훈련생 등이 F, J, M, Q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들이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바) 연금

연금소득은 연금을 발생하게 한 용역이 수행된 장소가 미국 원천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국내·외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하여 미국 내 신탁으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지급된 연금의 일부분 즉, 미국에서 수행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연금은 미국 원천소득이 된다.

사) 임대료 및 로열티소득

임대료수익이나 로열티수익의 원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소재지이고 특허권·저작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저작권이 사용된 장소이다.

아)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대한 미국 원천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이다. 미국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부동산소득은 미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처분이나 판매로부터 이익, 이득 등이다. 부동산관련 지분은 개인자산소득이 아닌 부동산소득에 포함된다.

자) 개인자산(동산)소득

개인자산소득에 대한 미국 원천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매도자의 납세지이다. 개인자산은 기계, 장비나 가구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의미한다. 개인자산의 양도자가 미국에 납세지(tax home)를 가지는 경우 개인자산의 교환, 판매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미국 원천이 된다. 양도자가 미국에 납세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납세지는 사업이나 고용에 대한 주된 장소로 가족의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다. 즉, 고정사업장 등의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인자산소득은 미국 내 원천소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미국 내 고정사업장 등의 주된 사업장이 있으면 개인자산의 판매에 대한 소득은 미국 내 원천소득이 된다. 개인자산에는 미국 내의 사업을 위한 주식,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차) 재고자산 판매소득

구매한 재고자산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그 자산이 판매된 장소가 원천이 된다. 미국에서 생산되어 국외에 판매된 재고자산은 일부는 미국 원천소득이 되고 일부는 국외 원천소득이 된다.

2) 미국 내 사업(trade and business)과의 실질적 관련성

비거주자의 소득은 미국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소득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한다. 미국 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소득은 일부를 공제한 후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로 누진과세되고, 미국 내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소득은 30%의 단일세율 또는 조세조약상의 우대세율로 과세된다.

납세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미국의 원천으로부터 얻어진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이익, 이득, 손실은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취급된다. 투자소득과 그 외의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여 미국 내 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투자소득

미국의 투자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고정적이고 결정 가능한 이익(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프리미엄, 연금 등)이고, 둘째는 특정자산의 판매나 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으로 특정자산은 내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목재, 석탄, 국내의 철광석과 1966년 10월 5일 이후에 조건부로 지급받은 특허권, 저작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 또한 1966년 10월 4일 이전에 거래된 특허권, 그리고 어음할인액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본이득(손실)이다.

투자이익(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특정 항목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자산사용기준 및 사업활동기준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판단에 따라 앞서 세 가지로 분류된 미국의 투자소득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다른 실질적 관련소득에 포함하고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1) 자산사용 기준

자산사용 기준은 보통 사업 활동에서 소득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의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간주된다. 즉,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미국에서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거나 미국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보유·취득되는 자산(예를 들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그 외에 미국 내 사업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단순히 미래의 예상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활동 기준

이 기준은 대체로 적극적인 사업활동으로부터 직접 획득하는 이익, 이득이나 손실에 적용한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판매자에게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특허권이 나 이와 유사한 자산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받은 경우, 서비스 사업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기준의 판단 원칙은 미국 내 사업활동이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나) 그 외의 소득

앞서 언급된 투자소득 외에 소득에 대한 미국 내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거래의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미국 내 부동산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미국에 원천이 있으며, 해당 자산이 자본자산인지 여부에 관

계없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미국 내에서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 원천소득이다. 연금의 경우에도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국 원천소득이 된다.

〈표 IV-2〉 미국 내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거래종류	실질적 관련성을 결정하는 기준
개인서비스	• 미국 내 사업으로 간주된 사업에서 수취한 소득
연금	• 1986년 이후 미국 내 사업에 종사하여 받은 연금은 연금을 수취한 해의 실질적 사업과 관련
운송관련 소득	• 일정 조건 만족시 실질적 관련성 있음 ¹⁾
사업이익과 손실 및 판매거래	• 미국 내 사업의 운영에 따른 미국 원천소득으로부터의 이익과 손실은 실질적 관련성 있음
부동산 이득 및 손실	• 해당 소득은 미국 내 사업이며 실질적 관련성 있음
미국 내 부동산관련 지분	• 납세자가 미국 부동산 지주회사라면 내국법인의 주식판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미국 내 사업 ²⁾
적격투자회사 ³⁾ (QIE: Qualified Investment Entities)	• 미국 부동산 지분의 교환이나 판매이익의 배당은 미국 부동산이익으로 취급 단, 기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은 주주가 분배일 전 1년 동안 해당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미국 부동산 지분의 교환·판매이익으로 보지 않고 주주 배당소득으로 봄

주: 1) 예외 조건.

a) 이익과 관련하여 미국 내 사업을 위한 고정 장소를 가짐.

b) 미국 원천 운송소득의 90% 이상이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운송에 속함.

2) 미국 부동산 지분은 만약 납세자가 주식종류별로 공정시장가치의 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정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종류에 포함되지 않음.

3) 미국부동산 지주회사인 부동산투자신탁(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이나 감독을 받는 투자회사(RIC: Regulated Investment Company)임.

자료: IRS(2006) 자료를 표로 재구성.

나.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신고방식

1) 세율

미국에서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소득은 미국 내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¹⁷⁾. 즉,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수취한 소득이 미국 내 사업

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미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납세자의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면 특정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30%(조세 조약에 의한 경감세율 적용 가능)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신고방식

비거주지의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정적이거나 결정 가능한 소득

고정적이거나 결정 가능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국 원천소득금액에 30%(조세조약에 의한 경감세율 적용 가능)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해당 소득의 금액 및 시기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결정 가능’이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지급되는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의미이다. 고정적이거나 결정 가능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은 이자(발행할인어음 제외), 배당, 임대료, 프리미엄, 연금, 임금이다.

나) 자본이득 및 손실

미국에서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미국 원천의 자본이득과 손실에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미국 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양도소득도 이 규칙을 따른다.

앞서 미국의 투자소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특정자산의 판매나 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183일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3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여기서 특정자산은 내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목재, 석탄, 국내의 철광석과 1966년 10월 5일 이후에 조건부로 지급받은 특허권, 저작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 또한 1966년 10월 4일 이전에 거래된 특허권, 그리고 어음할인액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이다. 내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목재, 석탄, 국내의

17) 장근호(2004).

철광석에 대한 이득은 납세자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투자소득에서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손실)에는 183일 규칙이 적용된다. 183일 규칙은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다면 납세자의 자본자산의 교환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자본이득-자본손실)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때 순이익에는 납세자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납세자가 미국 내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이전에 과세연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183일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자의 과세연도는 역년이 되므로 납세자는 역년 기준으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만 한다. 납세자가 과세연도 동안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과세연도 동안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된다.

다) 부동산소득

미국 내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 광산·유전·가스전·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사용료 등이 이러한 소득이며, 내국인이 경제적 지분을 갖고 있는 목재·석탄·철광석 등의 양도 및 교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이에 해당된다.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으로 선택하면 납세자는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 선택에 따라 미국 내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미국 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미국 내 원천소득 중 개인자산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자산 소득의 원천지는 납세자의 납세

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비거주자가 미국에 납세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소득이 되고 비거주자가 미국에 납세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소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납세지는 사업을 위한 주된 장소로 고정사업장의 개념으로 파악되며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에 납세지를 가져 개인자산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자산사용 기준과 사업활동 기준으로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83일 규칙을 적용하여 183일 미만 체재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면제하고 183일 이상 체류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경우에는 조약상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라. 한·미 조세조약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규정은 거주지 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조건은 첫째, 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둘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人)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이다¹⁸⁾. 또한 한·미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

18) 국세청(2006).

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¹⁹⁾.

2. 일본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일본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에 대해 일본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만을 과세하고 있는데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에서는 11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최근에 3가지를 더하여 총 1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더해진 3가지는 국내에 있는 조합계약에 근거하여 행한 사업에서의 이익배분, 국내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대가, 국내에서 행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급여소득·공적연금 및 퇴직소득이다.

1) 법인세법상 일본 원천소득

가) 제1호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일본 법인세법 제138조의 제1호는 포괄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국내에서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보유 혹은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기타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포괄하여 규정한다. 제1호를 각 소득항목에 따라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기본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이미 확립된 국제원칙도 고려하고 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원천소득 구분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국조 46017-89, 2001. 5. 23 참조.

(가) 도매업

도매업은 상품의 양도 장소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 상품의 구입·판매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그 판매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하게 되고 국내에서 구입된 물품을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부 국외원천소득이 된다. 양도가 국내에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양도인이 양도하기 직전에 양도하는 재고자산이 국내에 있거나 양도하는 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재고자산이 관리되고, 둘째, 양도에 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며, 셋째, 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는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이다.

(나) 제조업

제조업은 제조장소와 판매장소에 원천소득을 배분한다. 해당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제조, 가공 등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을 했던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했던 재고자산을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그 제조판매 등의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해서 독립가격원칙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결정한다.

(다) 건설공사 등

건설공사 등의 소득은 서비스 수행지가 원천소득 결정의 기준이 된다. 해당법인이 국외에 건설, 설치, 조립 등의 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재를 조달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계약체결 등을 국내에서 행하고 작업 등의 시행을 전부 국외에서 행한 경우에는 그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소득이 된다.

(라) 국제운송

국제운송은 국내소득이나 국외소득 하나로 소득원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소득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성상 일정기준에 의하여 발생소득을

배분한다. 해당 법인이 국내·외에 걸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운송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선박 운송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승선하거나 선적한 여객이나 화물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항공기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업무에 따른 수입금액이나 경비, 국내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등의 제 요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마) 보험업

해당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국내에 있는 영업소나 국내에 있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바) 광고업 등

광고업 소득의 원천지는 매체에 의하여 광고가 행해지는 국가(계재지)가 된다.

(사) 기타소득

위에서 설명한 사업 이외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 국내지점에 속하는 국외투용자소득

국내에 지점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자(일본법인인지는 불문)에 대해 금전을 대여, 리스,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국내에 있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정)은 전액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그러나 금전 대여, 리스, 투자, 기타 행위가 행해졌던 외국(외국법인의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를 제외)에서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과세를 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과세가 행해졌거나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를 입증하는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 보유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국내에 있는 자산은 법에서 열거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에 열거된 자산은 예시에 불과하고 일본 내에 있는 통상의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대상이 된다. 특히 유가증권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유가증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7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어지는 것으로 국내에 있는 영업소를 통해서 양도되었으며 계약이나 기타에 근거한 양도의무가 생기기 직전에 증권이나 증서 또는 해당권리를 입증하는 서류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본다.

(3) 기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서 법에 규정된 것

제2호부터 제11호에 규정된 소득을 제외하고 일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은 5가지이다.

첫째, 국내에서 행한 업무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둘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 소득

셋째, 국내에서 발견되어진 매장물이나 국내에서 획득한 유실물관련 소득

넷째, 국가에서 행한 현상응모에 근거해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소득

다섯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예시 외에 국내에서 행한 업무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하여 공여를 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소득

여기서 국내에서 행한 업무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하여 공여를 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 자신이 국내에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채무면제 이익이나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나) 제2호 국내에서의 인적용역사업(예능인이나 직업운동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제공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국내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행하는 법인이 받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다) 제3호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의 대여나 선박,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채석법의 규정에 따른 채석권의 대여(지상권이나 채석권의 설정 기타 타인에게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나 채석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 광업법의 규정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 또는 비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따른 대가는 법 제138조 제3호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제3호 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대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사용되어지는 장소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지 않으므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라) 제4호 일본의 국채나 지방채 혹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이 예금한 예적금 이자 등

이자소득 중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채 중 일본국의 국채나 지방채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내에 있는 영업소나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예금한 예적금의 이자,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되었던 합동운용 신탁이나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마) 제5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 중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기금이자와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투자 신탁 또는 특정목적신탁의 수익분배금은 일본 원천소득이다. 즉, 배당소득은 지급자의 거주지가 해당소득의 원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바) 제6호 국내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그 업무에 관련이 있는 이자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했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즉, 대여금의 이자는 그 대여금이 업무에 사용된 장소에 따라 원천지를 판단한다. 단, 여기서의 대여금은 국내에서 업무를 행한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와 관련된 채권 및 그 대가의 결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으로 이행 기간(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의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 제7호 국내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받은 공업소유권 등의 사용료나 양도에 따른 대가로 업무에 관련이 있는 것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나 대가로 해당 업무에 관한 것이면 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즉,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대여금의 이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지 결정의 기준은 해당 사용권에 대한 사용장소가 된다.

아) 제8호 국내에서 행한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

국내에서 행한 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한 상금(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해서 상으로서 지불한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자) 제9호 국내영업소나 계약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기타 연금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연금

국내에 있는 영업소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연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에 근거하여 받게 되는 연금은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차) 제10호 저당증권, 정기적금, 상호부금, 금저축 등 금융유사상품에 대한 이익,
급부보상금, 이자 및 수익

저당증권, 정기적금, 상호부금, 금저축 구좌, 외화정기예금, 일시부양노보험 등의 금융유사상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카) 제11호 국내에서 사업을 행한 자에 대한 출자와 익명조합계약 등에 근거해서
받은 소득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익명조합계약(이것에 준한 계약으로서 시행령에 정한 것을 포함)에 근거하여 받은 이익의 분배는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익명조합계약에 준한 계약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사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소득세법상의 일본 원천소득

이상에서 정리한 법인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이 개인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더하여 2005년에 3가지 종류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추가되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임의조합의 이익배분

임의조합 등의 조합원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합쳐서 '외국조합원'이라 함)에 대한 이익의 배분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고 20%의 원천징수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조합원 중에서 국내에 조합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원천징수를 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조합계약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합계약(임의조합),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유한책임사업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한책임사업 조합계약(일본형 LLP), 외국에서 행해진 앞선 계약과 유사한 종류의 계약을 의미한다. 민법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에 의하며,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은 무한책임 조합원 및 유한책임 조합원에 의하며, 일본형 LLP는 유한책임 조합원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일본 세무상 구성원과세로 취급되는 것이다. 외국의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마지막의 외국에서 행해진 앞선 계약과 유사한 종류의 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의조합·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유한책임사업조합 또는 이러한 조합과 유사한 외국의 조합(예를 들어 미국의 LLP)에 대한 외국 조합원은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조합원이 일본에서 행한 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일본의 소득세 징수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 조합원에 이익을 배분할 자에게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및 제5항, 제213조 제1항 제1호)와 지불조서제출의무(동225조 제1항 제8호)를 부과하여 적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일본의 세수입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나)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소득

2005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부동산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과세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비거주자 등에 대해 국내의 토지 등의 부동산의 양도익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가 행해지지만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익에 대해서는 매집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익,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익 등 일정한 것에 한하여 과세가 되어 왔다(소득세법 제161조 제1호, 제164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38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제3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경감할 목적으로 토지 등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대신에 국내 혹은 국외에 법인이나 신탁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나 신탁으로 하여금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신탁의 수익권을 거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자산가액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부동산관련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이나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가액 총액의 50% 이상인 신탁(부동산 관련 특정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한 소득 중 일정 부분에 대해 부동산 양도익과 같은 종류로 하여 신고납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제5호, 제291조 제1항 제4호, 제8항~제1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2항 제5호, 제187조 제1항 제4호, 제8항~제12항).

다) 비거주자 등의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익

비거주자 등이 행한 내국법인의 부동산 관련 주식 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집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소득 등 일정 요건의 주식양도소득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란 ①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등(내국법인의 주주 등 및 그 동족관계자,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소유주식 수 요건), ②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를 행한 비거주자 등을 포함하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등이 그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양도한다는(양도주식 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양도를 말한다.

최근 일본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등이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를 취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소득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 등의 범위에 내국법인의 주주가 체결한 조합계약에서의 조합원을 포함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91조 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4항 및 제5항).

나. 세율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 등의 사업상 거점(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나는데 사업상의 거점은 지점·공장인 경우(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41조 제1호), 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 등을 행한 경우(제2호), 계약체결대리인을 둔 경우(제3호), 그 외의 경우(사업장 거점을 가지지 못한 경우)(제4호)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상 거점의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은 <표 VI-3> 및 <표 VI-4>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VI-4>에서 열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법인세의 과세범위를 나타낸다. 표에서 설명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 중 중요한 것이 주식양도소득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자산의 소득에 속하므로 <표 VI-3>을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나 가지지 않은 경우에 모두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자가 행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덧붙여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자가 행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 12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자가 행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매입을 위한 경우 등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해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방법에 해당한다. 참고로 신고분리과세는 해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식양도소득 과세특례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에게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표 VI-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4호	원천징수	
	1호	2호 및 3호			
사업의 소득(1호)	종합	과세	비과세	없음	
자산의 소득(1호)			종합과세	없음	
기타 국내원천소득(1호)				없음	
조합계약 사업이익의 배분(2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비과세	20%	
토지등의 양도대가(3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10%	
인적용역의 제공사업대가(2호)				25%	
부동산의 임대료 (3호)				20%	
이자 등(4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원천	분리과세	15%
배당 등(5호)					20%
대여금이자(6호)					20%
사용료 등(7호)					20%
급여 기타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공적연금, 퇴직수당(8호)					20%
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한 상금(9호)		[국내사업 귀속]	[국내사업 귀속 안됨]		20%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 등(10호)					20%
금융유사상품에 관한 수익 등(11호)					15%
익명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분배(12호)					20%

자료: 일본국세청(2006).

〈표 VI-4〉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4호	원천징수
	1호	2호 및 3호		
사업의 소득(1호)			비과세	없음
자산의 운용 및 보유에 따른 소득(1호)	[법인세 과세]			없음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1호)			1)	없음
기타 국내원천소득(1호)				없음
인적용역의 제공사업대가(2호)				20%
부동산의 임대료(3호)				20%
이자 등(4호)				15%
배당 등(5호)				20%
대여금이자(6호)			[원천 분리과세]	20%
사용료 등(7호)				20%
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한 상금(8호)				20%
				20%
급여 기타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공적연금, 퇴직수당(8호)	[국내사업 귀속]			20%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 등(9호)				20%
금융유사상품에 관한 수익 등(10호)				15%
익명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분배(11호)				20%

주: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4에 나타난 소득.
 자료: 일본국세청(200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교부받아서 그 면제증명서를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그 지급자가 지불하는 국내 원천소득 중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형태가 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 등이나 대리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작업 등이나 대리인 등에게 귀속되는 부분의 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면제증명서를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2004년 개정으로 면제증명서의 제출방식이 면제증명서의 제시방식으로 개정

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면제증명서를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시하여 이 특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자에게 면제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그 지불자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의 지불을 받은 경우라도 그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 중에 지불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후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서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적용된다. 즉, 2004년도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 등의 원천징수면제규정(제시방식)은 외국은행 등 이외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면제증명서의 제시방식에 따르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의 형태가 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 등 또는 대리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작업 등이나 대리인 등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는 20%이지만 조세조약에 별도 제한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조세조약의 세율이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중에는 신고기한 전에 양도대금을 외국에 송금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토지 등의 양도를 받은 자에게 그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양도대가가 1억엔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양도를 했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다.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일본은 거주자인 경우에 1989년 4월 1일부터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과세방법은 양도자, 유가증권의 종류, 양도방법 등에 따라 원천분리과세, 신고분리과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로 나누어진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하여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²⁰⁾. 주식양도소득을 일시에 종합과세로 전환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과세자료의 확보라는 기술적 문제로 과세의 불공평이 오히려 심화된다고 보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특례조치법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을 달리 서술하고 있는데,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범위는 차이가 있으나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권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매집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과세되는 주식의 예는 과세범위에서 앞서 설명한 바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91조 제1항 제3호).

라. 한·일 조세조약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한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호에서, 전호에서 규정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호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이고 제3호는 부동산 관련 주식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2호는 비거주자가 일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천지인 일본의 과세소득이 될 수 있고 제3호는 부동산관련 주식의 경우에 일본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http://www.mof.go.jp/singikai/zeicho/tosin/tx1g.htm>.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한 25%인 경우
 - 나. 양도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한 5%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캐나다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의무는 납세자가 수취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Part XIII 과세와 Part I 과세로 구분되는데, Part XIII 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에서 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원천분리과세된다. Part I 소득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 가능한 자본이득은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Part XIII에 해당되는 수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은 단일세율로 원천분리과세된다. 수동적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한 지급총액이며 원천징수

세가 최종적인 세부담이 된다.

다음에서는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결정원칙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나서 세율과 과세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한다.

1) Part I의 국내원천소득

가) 사업소득

만약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Sec.115하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 조건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이 수행된 경우에 캐나다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캐나다 원천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계약이 되었는지, 상품이 어디에 배달되었는지, 어떤 서비스가 수행되었는지, 이익이 어디서 가득되었고 부가가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지급장소가 어디인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소득세법 Sec.253은 다음의 활동을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활동으로 간주한다.

첫째, 캐나다에서 행해진 생산, 재배, 채굴, 창작, 제조, 직조, 개발, 포장, 보전 또는 건설 등

둘째,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된 장소와는 관계없이 대리인이나 직원을 통하여 캐나다에서의 판매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주문을 권유하는 행위

셋째, 캐나다 천연자원이나 목재자원, 캐나다에 위치한 부동산의 처분

그러나 조약이 없는 경우에 국내원천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고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국제기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소득

캐나다 소득세법 Sec.115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장소에 의해 원천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천지에서 수행된 근로소득인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과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짧은 기간의 고용인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자본이득

비거주자는 자본이득이 “캐나다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자산”이나 “과세 가능한 캐나다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가능한 캐나다 자산”은 캐나다에 위치한 부동산과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비공개 캐나다 법인의 주식, 시장가치로 평가한 파트너십 자산의 50% 이상이 과세 가능한 캐나다 자산으로 구성된 파트너십의 지분, 단위신탁을 제외한 캐나다 신탁의 자본지분, 비거주자가 과거 60개월 동안에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했던 경우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이다.

2) Part XIII 소득: 수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

캐나다 소득세법 Sec.212에 의하면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투자소득 등은 캐나다 원천소득이 되며,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이러한 소득 중 중요한 것으로는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와 부동산소득, 신탁소득, 연금, 경영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데 실패하면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나. 세율 및 과세방법

1) Part XIII 과세체계

Part XIII 과세체계는 수동적 소득에 대해 종류별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세체계이다. 비거주자가 Part XIII 과세체계에 속하는 캐나다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지급자(금융기관을 포함)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캐나다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이다. 예외적으로 캐나다 원천의 임대소득이나 목재에 대한 로열티, 특정 캐나다 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Part XIII의 소득종류이더라도 납세자가 과세소득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이고,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감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캐나다의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이자를 추징한다. 본래의 세금과 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거주자나 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 또는 둘 모두에게 추징하며,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징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번 가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도 계속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0%로 높아진다. 조세조약 등으로 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후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Part I 과세체계

Part I 과세체계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 납부체계를 말한다. 근로소득 등과 같이 해당 소득에 대해 캐나다 거주자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자가 추후에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세금을 정산한다. Part I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소득은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캐나다에서의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캐나다의 거주자인 납세자의 국외 고용소득 중에서 특정소득, 캐나다 장학금 등 중 일부,

특정 캐나다 자산의 판매와 처분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자본이득,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의 과정 이외에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의 소득이다.

Part I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소득의 종류 중에서 특정 캐나다 자산의 판매와 처분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있는데, 특정 캐나다 자산에는 무엇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특정 캐나다 자산

특정 캐나다 자산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캐나다 부동산, 천연자원, 목재 그리고 과세 가능한 캐나다의 자산 등을 의미하는데, 과세 가능한 캐나다의 자산은 캐나다 내의 부동산, 캐나다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캐나다 사업용 자산, 보험업자에게 속하는 특정 보험 자산, 정형화된 주식 교환으로 등록되지 않은 캐나다의 비상장법인 지분(뮤추얼펀드 회사는 제외), 캐나다 거주자 신탁의 자본지분(단위신탁 제외),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특정지분, 파트너십의 특정지분 등이다.

(2) 특정 캐나다 재산 처분에 대한 과세절차

캐나다의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앞서 언급한 특정 캐나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계 1 - 처분(자산 처분 후 1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지)이나 처분예정(자산이 실제로 처분되기 적어도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고지)에 대해서 국세청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할 때에는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된 세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단계 2 - 납세자가 국세청에 고지를 하였고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특정자산 처분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발급한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즉, 처분 10일 이내에 캐나다 국세청에 고지하지 않은 비거주자 양도인은 §162(7)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가산세는 고지가 늦은 날부터 1일당 \$25이고, 가산세 총액은 최소 \$100에서 최대 \$2,500이다. 만약 납세자가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지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면 그 자산의 양수자가 세부담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자가 일정 한도 금액을 차감한 이익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세할 권한을 갖게 되며, 특정 재산의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계3 -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처분에 대하여 캐나다에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처분에 대한 결과로서 국세청에 납부했던 모든 세금은 중간예납으로 간주되며, 납세자가 그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때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이 확정된다.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캐나다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인은 그 처분이 발생한 과세연도 말 후 6개월 이내에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신탁은 처분이 발생했던 그 신탁의 과세연도 후 90일 이내에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방법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과세자산의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주고 있다²¹⁾. 첫 번째 방법은 과세 가능한 캐나다 자산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처분예정금액을 사전에 국세청에 통보한 후 예정 이익의 25%(2000년 2월 28일 이전에 33 $\frac{1}{3}$ %, 2000년 2월 27일 이후부터 2000년 10월 18일 이후까지 30%)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예정처분금액이 기재된 증명서를 비거주자와 구매자가 발부받게 된다. 이후에 실제 처분액이 예정처분금액과 동일하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증명서의 발행에 대신하여 비거주자가 처분일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거래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야 하고 동일한 금액(예정 이익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계산됨)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하다.

만약 해당 거래에서 비거주자가 위에서 선택한 방법을 통하여 증명서를 얻지 못하면 구매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자산 구매가의 25%(2000년 2월 28일 이전에 33 $\frac{1}{3}$ %, 2000년 2월 27일 이후부터 2000년 10월 18일 이후까지 3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실제처분금액이 예정처분금액을 초과한다면 구매자는 해당 기간 안에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은 예정금액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

21) CCH(2005).

다. 주식양도소득

캐나다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형태로 과세하는 Part XIII 과세체계와 종합과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Part I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정 캐나다 자산의 판매와 처분에서의 자본이득은 Part I 과세체계에 속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 캐나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Part I 과세체계는 처분시의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신고납부로 구성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비공개주식 양도소득과 특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주식양도소득 등으로 비상장주식과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과세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일정금액을 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후에 신고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분금액과 실제 처분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선납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라. 조세조약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한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호에서는 전호에서 규정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과세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4호는 부동산 관련주식이고, 제5호는 비거주자가 캐나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주식양도는 원천지인 캐나다의 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 가.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 또는
 - 나.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 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7. 제6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타방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재산 양도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동 재산(제8항이 적용되는 재산 제외)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개인이 더 이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일방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일방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타방체약국의 과세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

4. 독일

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1)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독일 세법에 의하면 독일 내에 법적 주소지나 관리장소를 가지지 않는 회사는 비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독일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독일 원천소득은 독일소득세법(EStG §49)에 규정하고 있고 다음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농업과 임업의 소득이고, 둘째는 독일 내에 고정사업상의 운용, 독일 내 부동산의 판매,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권리의 매각, 판매자가 매각 이전에 5년 동안 그 회사 자본의 1% 이상을 소유했었던 독일 회사의 지분매각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셋째는 배당이나 이자를 포함하는 투자소득이고, 넷째는 임대료와 로열티소득이다. 그러므로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1% 이상을 소유했던 독일 회사의 지분매각이 독일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독일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때 원천징수세율은 25%이다.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

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액 총액에 세율을 곱하여 과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세는 완납적 납세가 된다.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독일 원천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순이익이 독일의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가 있다면 공제된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는 것은 고정사업장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징수세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동산(장비, 기계)의 사용에 대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은 25%의 원천세를 부담한다. 장비에 대한 로열티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비거주자는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서 독일 소득세를 부담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계산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르지만 거주자에게 허용된 세액공제의 대부분은 비거주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비용은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과 경제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손실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인적공제의 대부분은 비거주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1년 동안의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였다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독일 원천소득은 모두 거주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되어 거주자의 소득이 된다.

비거주자의 원천소득도 법인의 경우와 유사한데, 첫째는 농업과 임업활동 소득, 그리고 독일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둘째는 거주자 법인에 대하여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비거주자의 지분매각소득이다. 셋째는 자영업 소득 및 근로소득이고 넷째는 투자소득으로서 거주자가 지급한 배당, 전환사채·이익배당부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이며, 다섯째는 독일에 등록되거나 위치한 무형자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다. 여섯째는 독일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특정 기타 소득이다. 자본이득은 통상적으로 비과세이나 투자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보유

한 경우 또는 단기적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투자소득인 경우 독일 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란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투자소득이란 사업용으로 활용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말한다. 비거주자의 독일 원천소득은 원천징수방식으로 과세되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다른 소득 관련 비용은 그 비용들과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을 한도로 공제된다. 직접신고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특정 소득항목으로부터의 손실은 다른 소득항목으로부터 상계시킬 수 있다. 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은 만약 그 소득이 독일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된다. 만약 원천징수세가 부과된 소득이 독일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납부시 세액공제된다.

자본이득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이득, 투자로 보유하던 개인자산의 양도이득, 다른 개인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전체 사업이나 자치권이 있는 부분 혹은 파트너십 지분을 개인이 처분한 경우의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양도자가 55세 이상이면 €45,000까지의 기초공제가 인정된다. 공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되면서 갖게 되는 불리한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경감세율은 자본이득을 가상적으로 5년 동안 안분한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을 근거로 계산한다(1/5 규칙). 납세자가 55세 이상의 노령이고, 자본이득이 5백만 유로 이하이면 별도의 경감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경감세율은 일반세율의 56%에 해당하는 세율이고 최저한세율은 15%이다.

나)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개인 자산의 판매

개인이 법인에 투자한 자산(투자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즉, 개인이 과거 5년의 기간 안에 해당 법인의 지분 중 최소 1% 이상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개인이 지분을 양도하여 취득한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이 때 지분비율을 가중하여 계산한 공제가 허용되는데, 최대 €9,0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절반이득(half-income)의 규칙²²⁾이 적용되어 공제액 초과 이익의 50%만 과세대상이 되고 그 외의 이익은 과세 면제된다.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

3) 다른 개인 자본이득

개인이 사업이나 거래에 사용되지 않은 자본자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득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 유가증권과 같은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인수 이전에 발생된 처분이나 인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분이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따른 순이익이 연간 €512의 공제액을 초과하면 일반세율의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본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일 연도의 동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 동일한 연도에 이득과 상계할 수 없었던 손실은 이월공제나 소급공제의 일반규칙에 따라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다.

나. 세율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독일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는지에 따라 세율 및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고정

22) Half-income rule은 자본이득에 적용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도 적용된다.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다음은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세율을 설명한다.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은 원천징수세를 부담하는데 세율은 20%에서 35% 사이이다. 원천징수세는 지급자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투자소득에서 소득에 대한 공제나 관련비용을 차감하기 이전의 총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독일 국내 은행에 의해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 이자소득원천세는 통상 30%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이러한 원천징수세는 이자의 수급자가 국내은행인 은행간 거래이거나 이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환사채나 이익배분권부 사채·대부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무기명부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로열티와 동산의 임대료 등에 대한 세율은 25%이다.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 소득세법 제50a(4)조와 제43조에 따르면, 독일에서 외국으로 지급되는 배당과 같은 특정 투자 소득이나 사용료와 같은 보수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이나 과세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은 사후적으로 원천징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독일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²³⁾. 환급신청은 4년 이내에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법 제43a조에 따라 독일에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부터 외국의 모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은 자본소득 과세를 면제해 준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 모회사는 최소한 명목자본금의 25%를 직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이 지분보유는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U회원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모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도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50d(3)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독일 원천징수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사전적 면제도 받을 수 없다²⁴⁾.

23) 안종석·홍범교(2006), Weyde and Kraemer(2002), p. 7.

- i) 해당 외국법인을 통하지 않고 주주가 직접 소득을 취득하며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ii) 외국 법인이 개입될 경제적 이유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iii) 외국 법인이 능동적으로 사업 활동을 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독일 과세당국은 외국 모회사가 적법한 사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다. 주식양도소득과세

독일의 소득세법 제40조에서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에는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독일에서의 자본이득은 면제되지만 특정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는데 특정 주식양도소득은 과거 5년간 한번이라도 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소득을 말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고정사업장이 있고 해당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분리과세된다.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한 25%이다.

라. 조세조약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조약 제13조 제5호에서 전호에서 규정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13조 제2호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호의 가목

24) Weyde and Kraemer(2002), p. 7.

이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이고 나뭇이 부동산 관련 주식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목은 비거주자가 독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그 소유지분의 5%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고, 나뭇은 비거주자가 지분을 소유한 독일법인이 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한 법인인 경우에 해당 주식은 부동산 관련 주식으로 보아 비거주자가 양도시 원천지국인 독일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항상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 이상을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 나. 동 법인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2항 가목에 관하여, 그 조세가 결정되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어떤 인이 다른 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제3자나 제3자들이 양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동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5. 호주

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호주에서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에 차이가 없어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을 함께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호주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면, 호주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나 비거주자가 호주에서 서비스를 수행하여 발생한 개인서비스 소득은 호주의 원천소득이 된다. 호주 원천소득을 결정하는 규칙 및 원천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판례법에 따른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문가 소득은 호주원천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은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호주는 OECD 모델조약보다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인 회사주주에 대해서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며, 면제 대상이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투자소득은 배당, 이자, 로열티 소득이 있는데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그것이 최종적인 세부담이다. 원천세율은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총액의 30%,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총액의 10%, 로열티에 대해서는 지급된 로열티의 30%이며 조세조약에 의하여 경감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원천소득으로는 경영자문 수수료, 기술서비스 수수료, 임대소득이 있고, 이러한 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 외에 비거주자의 선택으로 최종적인 원천징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험과 재보험이 있다.

호주에는 비거주자에 대해 예납적 원천징수제도로 운영하는 원천소득세가 있다. 카지노, 도박, 유흥 행위에 대하여 3%, 연예활동이나 스포츠활동에 대하여 법인은 법인세율, 개인은 개인소득세 한계세율, 건설 및 관련 활동에 대하여 5%로 해당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시 정산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활동에 대해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한 것은 이들 활동을 하는 비거주자들이 호주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호주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거주자가 이전에 성실하게 납세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도 있다.

호주의 자본이득은 호주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나. 호주의 자본이득과세

현재 호주의 자본이득세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호주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호주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5월 10일에 호주 정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과세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으며, 2006년 12월 7일에는 호주의 부동산과 호주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소유의 직·간접적인 지분의 자본이득세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호주에 투자한 비거주자의 이익에 대한 호주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수정되어 주로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2006년 12월 12일 이전에 호주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되고, 그 이후에 처분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호주의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산 등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1) 개정 전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해당 자산이 호주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경우 (necessary connected with Australia)에만 자본이득이 과세되었다. 필수적으로 관련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 첫째, 호주의 토지 혹은 건물(혹은 건물 혹은 땅에 대한 지분)
- 둘째,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자본자산
- 셋째, 자본이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동안 호주의 거주자인 주식회사(public company) 외의 회사(private company) 주식
- 넷째, 호주의 거주자인 상장회사로 비거주자 및 관계회사가 자본이득이 발생하기

전 5년 동안 한번이라도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었던 주식회사의 주식 혹은 주식에 대한 지분

다섯째, 호주의 거주자인 조합이나 신탁으로 비거주자 및 관계회사가 자본이득이 발생하기 전 5년 동안 한번이라도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었던 조합이나 신탁의 지분

여섯째, 자본이득이 발생했던 과세연도 동안 자본이득 과세 목적상 거주자 신탁이 되는 신탁의 지분

일곱째, 위에 규정된 자본이득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옵션

따라서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던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은 호주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경우로 보아 과세되었다.

2) 개정 후

개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첫 번째는 과세대상을 호주의 사업용 자산과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지분으로 축소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지분을 과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이다²⁵⁾. 개정 규정에 따라 호주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자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부동산자산

둘째,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자산

셋째, 호주 부동산 관련 지분

이 중 처음 두 가지는 이전에 있던 것과 같으며, 세 번째는 새로 추가된 것이다. 세 번째에서 호주 부동산 관련 지분은 기업, 신탁 또는 파트너십의 지분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분을 말한다.

- (1) 납세자(지분을 양도하는 비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양도하는 시점에 총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양도하기 이전 2년 중 1년의 기간 동안 총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였으며;

25) Hertzman and Murray(2006).

(2) 시장가치로 평가한 총자산의 50% 이상이 호주의 부동산인 기업, 신탁 또는 파트너십 지분

이때 해당 기업, 신탁 또는 파트너십이 호주 거주자인지 여부는 관계없다. 즉, 외국 기업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자산이 주로 호주의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그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호주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조세조약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한 한국·호주 조세조약 제13조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기 조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칙인 한국·호주 조세조약 제2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호주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제13조 【재산의 양도】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동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의 목적상

가.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토지의 임대차 또는 토지 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이익
- (ii)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
- (iii)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 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있어서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

나. 부동산은 다음 장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i) 동 부동산이 토지 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
- (ii) 동 부동산이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는 경우, 동 자연자원이 소재하고 있거나 또는 탐사가 실시되는 체약국 및
- (iii) 동 부동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 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법인의 동 자산 또는 주요 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동 체약국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상기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모델조약, 우리나라, 주요국의 제도를 대략적으로 개관하여 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주요국을 비교하면서 특징적인 현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모델조약과 각국의 조세조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주요 이슈별로 주요국 제도의 특징을 정리한다.

1. 조세조약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 모두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특정 주식은 부동산 관련 주식과 일정지분율 이상의 주식이다. OECD 모델과 UN 모델 모두 부동산 관련주식을 예외주식으로 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UN 모델은 이에 더하여 일정지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 예외주식으로 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도 물론 모델조약에 나타난 국제규범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 체결한 조약에서는 대체로 직접투자 주식과 부동산 관련 주식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직접투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동산 관련 주식은 총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는데, 예외 규정은 이러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과세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내법의 범위를 넘어서 과세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자국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의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시에는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에서도 자국 세법의 규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제도를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주요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특징

주요국명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 과세의 특징
1.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미국에 있는 경우 과세, 그 외에는 비과세 - 부동산 관련 지분은 예외 없이 과세 - 과세대상 소득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종합과세 -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에는 183일 규칙을 적용하여 30%의 세율로 과세 - 183일 원칙: 1년 중 미국 체제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과세, 그 외에는 비과세
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비거주자가 일본 내에 PE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 그 외는 비과세 - PE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주식: 부동산 관련주식, 매집을 위한 주식(25% 이상 보유, 5% 이상 양도) - PE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방법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특례조치: 상장주식을 증권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7%(2007. 12. 31 까지)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3.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소득: ① 판매자가 매각 이전에 5년 동안 자본의 1% 이상을 소유했었던 독일회사의 지분매각소득, ② 취득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주식양도소득 - 비거주자가 독일 내에 PE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 원천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은 양도총액의 25% - PE를 가지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 주식양도소득의 50%에만 과세

〈표 V-1〉의 계속

주요국명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 과세의 특징
4. 호주	- 납세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자산의 50% 이상 부동산인 기업, 신탁, 파트너십의 지분 양도차익만 과세
5. 한국	- 원칙: 모든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 예외: 국내에 PE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1) 과거 5년간 특정 상장기업 주식의 25% 미만을 보유하고 해당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또는 (2) 기타의 유가증권을 국내에 PE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 부동산 관련 주식은 PE 유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과세 - PE 귀속 소득은 종합과세, 그 외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0%

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비거주자 과세체계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 유무가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고정사업장(납세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며, 일본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독일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분리과세한다. 우리나라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한다.

캐나다와 호주는 유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호주에서 원천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두 나라는 다른 주요국과는 달리 고정사업장²⁶⁾의 개념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수행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는 모호한 개념으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²⁷⁾.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26) 나라마다 이에 대하여 항구적 시설, 납세자의 납세지라는 말로 달리 사용하며 그 의미도 약간은 차이가 남.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해당 국가의 움직임도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두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비거주자의 과세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부동산관련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일본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 및 부동산관련 주식만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캐나다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독일은 일정지분(1% 이상) 이상이거나 단기거래의 경우에 과세하고 있다. 호주는 일정지분 이상의 부동산관련 주식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관련 주식 및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 모든 주식,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와 독일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넓으며, 우리나라도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교하면 원천지국 과세를 중요시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조세조약은 주요국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는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최근 호주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과세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의 자본투자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과세범위 축소와 외국인투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3. 원천징수체계 관련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가증권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 규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천이 되는 주식양도소득을 조세회피지역에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조

27) Easson(2006)

약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조약 적용대상임을 입증하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조세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고, 납세자인 비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여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정지역을 조세회피 가능성이 특별히 크다고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선 원천징수-후 환불제도를 모든 국가에 대해 확대 적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를 경감시키면서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납세자인 비거주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제도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과 관련된 원천징수의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과 부담을 합리화하고 비거주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세회피관련

본고에서 검토한 다른 국가들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포괄적이고 정밀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두는 움직임이 볼 수 있다²⁸⁾. 주요국의 자국법에서도 단기적인 투기자본 및 조세회피를 제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캐나다는 과세 가능한 캐나다 자산이 파트너십 자산의 50%가 넘는 파트너십에 대하여 과세하고, 독일은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조세조약의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과세면제 허가를 받

28) 水野忠恒(2006), 일본은 2005년 초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미·일 조세조약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 조항을 채택하였고, 미국도 1996년 공포되어진 신미국모텔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모텔을 공표했다.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파트너십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과세해야 할 것이고 어떤 범위까지 국내원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파트너십관련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과세 가능한 캐나다 자산이 파트너십 자산의 50%를 넘는 파트너십 지분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면서 파트너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기자본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도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 전의 처분이나 매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식의 매각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책적인 관점에서 단기 투기자본의 폐해와 외국자본 유치라는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조세조약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에서는 이중과세배제 조항에서 과세권을 부여받은 일방체약국이 과세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타방체약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국가간 협의에 의해 제13조 양도소득의 제5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에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과세면제시 일방체약국의 과세권 행사 조건을 두는 것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은 자본이득의 범위에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분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파트너십 지분을 자본이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6.
- 김광윤, 「외국인관련 주식세제에 대한 연구-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재무관리학회, 1993.
- 김성수, 『행정법 I』, 법문사, 2000.
-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텍스, 2006.
- 김유찬, 「외국자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행위」, 『월간조세』, 조세통랑사, 2006. 5.
-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주)광교TNS, 2005. 3.
- 안종석·홍범교,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5. 6.
- 지원림, 『민법강의』, 호문사, 2006. 1.
- 한성수편저,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 세경사, 2004. 6.
- 武田昌輔, 後藤喜一, 『會社稅務釋義』, 第一法規, 2007.
- 水野忠恒, 『國際課稅の理論と課題』, 稅務經理協會, 2006.
- 日本國稅廳, 『源泉徵收のしかた』, 2006.
-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캐나다 국세청, 2005.
- Easson, Alex *Common Law Approaches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ource of Income: Pragmatism over Principle*, IBFD, 2006. 12.
- Evans, Chris and Matthew Wallace, *Capital Gains Taxation in Australia: Recent Developments Affecting the Corporate Sector*, IBFD, 2003.
- Hertzman and Murray, 2006.
- IRS, *US Tax Guide for Aliens*, IRS, 2006.

Marco Ardizzoni et. al, *German Tax and Business Law*, THDMSON SWEET&MAXWELL, 2005.

OECD,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and Key Tax Features of Member Countries* 2006, IBFD, 2005. 7.

Weyde, D. and Kramer, "German Tax Court Ruling Takes Aion at Treaty Shipping," *Tax Notes International*, Oct. 7, 2002.

KPMG, *Investment in Germany 2006*, 2006.

미국국세청, www.irs.gov

일본국세청, www.nta.go.jp

일본재무성, www.mof.go.jp

캐나다국세청, www.cra-arc.gc.ca

한국국세청, www.nta.go.kr

호주국세청, www.ato.gov.au

www.samili.com

IBFD, www.ibfd.org

KPMG German, www.kpmg.de

Pricewaterhousecoopers, www.pwc.com

세법연구 07-1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안중석 · 구자은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91-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